



관악구



수신자 서울대학교총장
(경유)

제목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학생 및 교직원 체류지변경 신고기한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귀교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외국국적동포) 학생 및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하여 귀교에서 수강중이거나 근무(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에 의거 등록외국인이 거주지이동(전입)시 '체류지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98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벌금이 부과되오니, 귀교 학생이나 교직원이 타지역 및 다른 기숙사(동, 호 이동도 해당)로 이사하여 체류지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지변경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 악 구 청



★주무관

명수진

민원처리팀장

임태권

민원여권과장

09/18
강미숙

협조자

시행 민원여권과-26209 (2014.09.18.) 접수 국제협력전략팀-5934 (2014.09.19.)
우 151-701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1570-1) / suzzang@ga.go.kr
전화 02-879-5314 전송 02-879-7813 / suzzang@ga.go.kr / 공개